

## 專 門 醫 修 鍊 規 程 < 全 文 >

政府는 2月 17日 字로 「專門醫修鍊規程」을 대통령령 第6075號로 公布, 이날부터 施行에 들어갔다. 全文 第17條부칙으로 된 이 規程은 醫療法 第36條 第1항의 規程에 의한 專門醫 資格인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修鍊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程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.

그 全文 內容은 다음과 같다.

**제 1 조 (목적)** 이 령은 의료법 제3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정의)** 이 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「수련의」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.
2. 「인턴」이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각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.
3. 「레지던트」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중 1과목을 전공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.
4. 「수련병원」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
**제 3 조 (수련)**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일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령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.

**제 4 조 (수련기간)** ①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③수련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말까지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련병원의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월 1일부터 다음년도 9월 30일까지로 할 수 있다.

**제 5 조 (수련병원의 기준)** ①수련병원은 적어도 내과·외과·소아과·산부인과·마취과·방사선과 및 임상

병리과가 설치되어 있고, 각과에 전속전문의를 있어야 하며 그 규모·과목별 시설·진료실적 기타 인적·물적 시설설비가 인턴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구분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수련병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 6 조 (수련병원의 지정)**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련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**제 7 조 (수련의의 정원)** 수련병원별·전문과목별 수련의의정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.

**제 8 조 (수련과정)** 수련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 9 조 (수련의 제도심의위원회)** ①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수련 병원의 기준·수련의의 정원·수련과정 기타 수련의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수련의 제도심의위원회 (이하 「위원회」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은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수련의 제도에 관여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

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, 간사와 서기는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.

**제10조(수당)**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수련병원의 장의 권한)** ① 수련병원의장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수련의를 임용하고 수련의의수련(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 수련을 포함한다)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② 수련병원의 장은 수련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련의를 해임할 수 있다.

**제12조(수련규정 및 기록의 비치)** 수련병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정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 제1호 이외의 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1. 수련에 관한 규정
2. 수련의 수련기록
3. 각종 회의록
4. 학술집회기록

**제13조(수련의의 임용보고)** 수련병원의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수련의 임용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파견수련)**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레지던트의 수련과정의 일부로서 그 수련기간중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지정하는 진료업무를 행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수련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것을 수

련병원의 장에게 명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수련의 명을 받은 수련병원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 교육 및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장은 그 병원에 배정된 파견수련의의 10분의1이내에서 그 파견수련의 명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수련의로서 파견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15조(수련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)** 보건사회부장관은 수련병의 원장에게 수련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**제16조(겸직금지)** 수련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령 시행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레지던트는 이 령에 의한 수련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③ (경과조치) 이 령 시행당시 인턴 레지던트의 수련을 위한 병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1972년 6월말까지 이 령에 의한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.

④ (경과조치) 이 령 시행당시의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여하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.